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45
----------	------

2017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8. 3. 조규영 의원(찬성의원 9명)
2. 회부일자 : 2017. 8. 7.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조규영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나.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서울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의 출석 수당을 신설하고, 보존묘지의 지정 기준에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또는 분묘)를 포함하는 내용임.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수당 신설 필요성(안 제4조제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같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존묘지(또는 분묘)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범위 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 ③ ~ ⑥ (생략)

- 서울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비상설 심의기구(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인 바, 최근 3년간 심사위원회 실적 개최가 없었음.
-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음.

나. 보존묘지 기준 확대(안 제5조의1제1항제3호)

- 개정안은 같은 법에서 정한 보존묘지 기준외에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신설하여 확대 적용토록 하였음.
- 보존묘지 지정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참고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애향정신 함양’을 보존묘지 지정 기준에 포함한 경우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8개 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② (생략)

2 개정 조례안에 대한 평가

-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망우리 공원 웰컴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중랑구 망우로 570 망우묘지공원 내)를 신축하여 ‘공동묘지’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유명인사 묘역과 그 인문학적 가치를 알리며, 연간 36만명의 이용자에게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망우묘지공원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근·현대사 선구자(50여명)들의 묘소가 분포되어 있어서, 시대적 증언과 문화적 다양성이 현존하는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여 ‘망우리 공원 웰컴센터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집행부의 보존묘지 지정현황을 보면, 단 한건의 지정도 없었고, 최근 3년간 심사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었음.
- 보존묘지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로서 묘지공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향토사학자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수시 협의를 가지며 구체적인 업무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개정안의 ‘위원회 위원 출석수당 신설’과 ‘보존묘지 지정기준 확대’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으나, 법과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5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3일

발 의 자 : 조규영 의원(1명)

찬 성 자 : 박중화, 김태수, 맹진영, 최웅식,
박성숙, 김상훈, 김용석(서초),
남재경, 송재형 의원(9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u><신 설></u></p> <p>② (생 략)</p>	<p>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u> 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4항(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신설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수당지급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5년간 48,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9,600천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함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수당(제4조 제4항)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소계(b)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총비용(b-a)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다.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
-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회 수당은 여비를 포함하며, 수당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12명, 회의는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물가변동률 미반영

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수당관련 (안제4조제4항)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48,000\text{천원}$

- 연간비용 = 위원회수당 + 운영경비

· 위원회 수당 = 1인(150천원) × 12명 × 4회 = 7,200천원

· 운영 경비 = 1인(40천원) × 15명 × 4회 = 2,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위원회 수당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운영 경비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계	9,600	9,600	9,600	9,600	9,600	48,000

주 1 :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 3명(복지본부장, 어르신복지과장, 사업담당공무원 등)을 제외한 12명, 운영경비는 15명을 기준으로 추계

2. : 위원회 수당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구 분	단위	단가	비고(지급기준)
위원회참석수당	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료 : 100,000원 ◦ 초과 :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최경희

☎ 02-3705-1282

e-mail : hiru90@seoul.go.kr